"이책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大 韓 衛 生 學 會 誌
KOREAN.J.SANITAT
Vol.4,No.1,1~5(1989)

# '89年度 食品衛生施策

曺 基 彧*
保健社會部 衛生局

# Policy on Food Sanitation in '89

Cho Kee Wook

*Bureau of Sani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I. 序 論

持續的인 經濟成長으로 인한 國民所得 水準의 向上과 함께 政治, 社會, 文化등 제분야에 있어서 우리 國家社會의 先進化는 '88. 올림픽을 계기로 跳躍의 過程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다.

지난 한해 國民保健과 營養水準 向上과 直結되어 있는 食品衛生分野도 '88. 올림픽의 성공적 開催를 支援하였던 중요한 分野로서 消費者인 國民, 製造. 供給者인 食品業界, 관련 民間團體, 그리고 行政機關 공동의 勞力과 關心속에 크게 발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89년도에도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의 發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社會의 民主化, 開放化, 地方化 및 自律化에 의한 持續的인 經濟發展은 國民生活 水準을 向上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國民의 食品에 대한 衛生, 營養, 간편성, 價格등에 있어서 다양한 慾求가 噴出될 것이고 食品을 製造하는 자와 飮食物을 調理, 販賣하는 者는 事業經營의 촛점을 이러한 國, 內外의 여건 變化課程에 맞추며 政府에서도 이에 副應하는 施策을 펴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目的인 食品衛生 水準의 向上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食品衛生水準의 向上을 위해서는 최근 우리 社會의 自律化 趨勢에 맞추어 製造, 加工業者, 요식업자, 販賣業者등의 자율적 勞力이 선행되어야 하고 政府의 衛生, 指導 監督은 不定, 不良食品의 製造, 流通, 非衛生的 食品의 調理

* 保健社會部 衛生局長

販賣등 國民의 健康에 위해한 제요인을 除去하고 철저히 防止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消費者團體의 食品衛生에 대한 관심제고와 利益向上을 위한 제노력도 效率的으로 支援되어 政府와 製造, 加工, 調理, 販賣業者 그리고 소비자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對外開放化政策에 따라 食品의 輸入이 急增할 것이 필연적이고 보면, 食品製造業體에서도 品質의 高級化, 製品의 多樣化 등을 위한 자체 신기술 開發과 研究가 倍加되어 輸入食品과의 競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自救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政府에서도 輸入食品과 동등한 여건하에서 國內製品이 競爭해 나갈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Ⅱ. 食品衛生行政 概要

食品衛生에 대한 定義를 食品衛生法에서는 "食品, 添加物, 器具 및 用器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衛生"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食品衛生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 內容을 世界保健機構의 다음과 같은 內容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食品衛生을 "食品原料의 栽培(또는 成長), 收穫, 生産 및 이들을 原料로한 食品의 製造에서부터 最終的으로 消費될 때까지 諸般課程에 있어서 健全性(Wholesomeness), 安全性(Safety), 完全性(Soundness) 확보를 위한 諸般措置"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食品衛生의 對象範圍는 食品의 原料로 부터 最終 消費段階까지 食品에 미칠 수 있는 모든 危害要素를 除去하는 제수단과 方法이 될 수 있는데,

i) 食品의 安全性, 完全性, 健全性 確保를 위한 食品등을 採取, 製造, 加工, 收入, 調理, 貯藏, 運搬 販賣하는데 있어서의 제기준과 成分에 관한 規格(농산물 농약 殘留量 許容基準등을 포함하는 食品등의 規格 및 基準, 添加物 規格 및 基準등)의 制定

ii) 製造 加工業, 調理販賣業 등의 製造, 販賣施設 基準 設定 및 許可管理(設備, 施設의 衛生管理)

iii) 製造 流通되는 食品등의 規格 및 基準과 諸般施設 등의 許可 要件에 適合與否를 사전및 사후에 확인 점검하는 製品檢査 및 臨檢, 收去

iv) 食品등을 取扱하는 者에 대한 教育과 製造業所의 衛生管理를 擔當하는 食品衛生管理人 및 販賣業所의 조리사와 영양사제도의 運營

v) 消費者保護를 위한 食品등의 표시및 廣告 지도 단속

vi) 食品營業者의 同業組合(團體)의 設立과 運營에 대한 指導, 管理 등이 현재 우리나라 食品衛生行政 주요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食品이 原料로 부터 最終 消費되는 각 段階 및 範圍는 우리 社會가 더욱 産業化되고 都市化됨과 함께 段階가 더 細分化되어 가고 流通對象 및 地域이 擴大되어 감으로써 食品衛生의 規制對象은 더욱 增加되어 가고 있는 바, 이러한 제단계에서 이를 監視, 監督하는 효율적 體制의 확보가 바로 끊임없이 變化 發展하는 國家社會에서 食品衛生行政이 擔當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 Ⅲ. '89. 主要 食品衛生施策

### 가. 食品接客業所의 衛生水準 向上

올림픽을 대비 推進하였던 食品接客業所의

주방공개, 객장 및 화장실 청결등의 事業은 소기의 目標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營業所의 청결유지상태, 종업원의 衛生觀念, 써어비스의 質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未洽한 實情이므로 衛生監視側面에서 持續的인 團束을 펴나가되 營業者 스스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與件을 造成해 나가고 모범 음식점 指定 制度등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영업주 및 從事者의 衛生教育은 그 教育內容인 개인衛生과 서비스 要領등에 대한 視聽覺教材의 開發을 통하여 教育効果를 높이되 新規 接客營業者 및 食品衛生管理人에 대한 사전 教育時間을 短縮하여 施行할 豫定이다.

**나. 農水産物의 安全性 提高**

流通되고 있는 農作物의 農藥殘留量과 水産物의 重金屬 汚染狀態를 정확히 把握하여 自然食品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對策을 樹立할 수 있도록 穀類, 야채류, 果實類와 어패류에 대하여 國立保健院과 市, 道 保健環境研究所를 통하여 地域別, 産地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는데, '89년에도 보리, 배추, 사과등 28개품목의 농산물에 대하여 다이아지논등 13종 농약의 殘留量을 조사케하고 고등어, 꽁치 등 20종의 水産物에 대하여 砒素, 水銀 등 7종 重金屬 含有狀態를 調査하여 그 결과에 따라 許容基準 설정등 必要한 措置를 할 計劃이다.

특히, '88. 9. 13. 고시되어 '89. 1. 1. 부터 施行중인 농산물 殘留量 許容基準은 殘留農産物 모니터링시 安全性 判斷與否의 基準으로 適用하고 아울러 輸入農産物의 檢査基準으로도 適用하므로써 流通되는 農産物의 安全性이 크게 提高될 것이다.

그리고 重金屬에 汚染된 水産物의 유통을 防止하여 국민위생상 위해 要因을 除去할 수 있도록 水産物 重金屬 許容基準을 '89년 상반기중 제정할 豫定인데 굴, 고막등 10종의 水産物에 대하여 水銀, 砒素등 7종의 重金屬을 그 規制對象으로 할 計劃이다.

**다. 添加物 規格基準의 整備**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添加物로는 工程規格 대상인 363종(化學的合成品 330종과 天然 및 混合製劑 33종)과 자가규격대상인 1,500종의 天然添加物이 있다.

'89년중에는 현재 使用이 許容되는 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對象 添加物을 保存料, 착향료, 감미료등 用度別, 體系的으로 分類하고 각 添加物에 대한 適正使用 基準을 補完, 整備하여 우리나라 規格基準을 國際的 水準으로 마련할 計劃이다.

이를 위하여 學界, 研究 機關, 關聯業體 등 分野別 專門家의 의견을 충분히 收斂하고 FDA와 WHO 의 基準을 참조하여 國際規格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 不正, 不良食品의 指導, 團束**

최근 우리 生活水準이 눈에 띄게 向上됨으로써 否定, 不良食品의 製造, 流通이 상당량 減少되고 있으나 아직 根絶되고 있지 못하다. '88년중에도 중앙과 地方의 321개 상설기동 감시반에 의하여 8,551건의 不正, 不良食品이 摘發(點檢件數 69,593건)되었다.

'89년중에는 不正, 不良食品의 製造流通을 根源的으로 봉쇄함으로써 國民食生活의 安全性을 최대한 保障하기 위하여 汎國民的인 不正,不良食品 추방분위기 造成과 함께 體系的이고 効果的인 監視, 團束 體制를 確立 運營할 計劃이다.

특히 어묵, 콩나물, 두부, 식용유, 빙과류, 장류등 국민 대다수가 일상 먹고있는 食品을 重點管理 對象으로 하여 시장 등 不正, 不良食品의 流通이 예상되는 취약地域을 集中 監視토록 하여 일상 다소 비식품중 否定, 不良食品의 流通이 根絶되도록 할 計劃이다.

이의 效果的인 推進을 위하여 地域別로 體系的인 기동 감시반을 編成하고 전국적인 不正, 不良食品 모니터링망을 형성하며 效果的인 監視와 團束을 위하여 消費者보호團體와의 유기적인 協調體制를 마련하고 食品衛生團體의 自律指導員의 활동을 조장, 지원할 것이다. 특히 不正, 不良食品을 製造, 流通케하는 者에 대하여는 食品衛生法 및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거 엄단하도록 法務, 警察등과 協調體制를 構築하였다.

### 마. 음용수 水質管理

環境汚染의 增大와 대도시 수도와 農漁村의 간이급수시설의 노후 또는 管理소홀은 國民이 상용하는 음용수의 衛生 및 安全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서울등 대도시의 수도물의 경우 취수원인 강물의 汚染可能性, 수도관의 노후, 水質 管理소홀 등이 潛在的 威脅要因이다.

그리고 給水 關聯業務의 部處別 多元化는 效率的이고 책임있는 給水管理에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國民에게 衛生的이고 安全한 給水의 保障을 위하여는 食水 衛生業務를 전담 處理할 전담과를 設置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음용수 水質檢査 基準을 補完하여야 하며 정수장뿐 아니라 家庭의 수도전까지 水質調査나 評價를 周期的이고 體系的으로 施行하여 이에 對處해 나갈 수 있는 體制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89년중에는 水質檢査 基準을 補完 改正하고 각 地方自治團體에서 水質檢査 및 管理를 철저히 하도록 確認, 指導를 강화할 것이며 정수장 關係者들에 대한 專門教育을 實施하여 給水의 衛生管理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關聯部處등에 노후관 交替등 施設改善 및 管理徹底를 강력히 促求하여 나갈 豫定이다.

### 바. 食品衛生法令, 制度 改善內容 및 方向

國民의 食品에 대한 消費형태의 變化를 收用하고 製造加工業者의 自律性과 상호 경쟁적 與件을 造成함으로써 加工食品의 質的向上과 多樣化를 기하기 위한 食品衛生法 改正法律이 '88년 定期國會에서 통과되어 '89. 1. 1. 부터 施行되고 있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營業 및 品目製造許可制를 신고제로 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食品의 製造, 流通課程에 있어서 衛生 및 安全性에 큰 문제가 없다고 判斷되는 營業 또는 品目에 대하여는 段階的으로 신고제로 전환하여 營業者의 自律性과 責任性을 提高시켜 나갈 方針이다.

(2) 同業者組合(團體)의 設立單位를 市, 道 또는 市, 郡, 區에서 전국단위로 조정한다.

(3) 지금까지 營業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賦課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上向 調整하고 品目製造停止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賦課基準 및 節次에 관한 同法施行令의 改正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4) 食品販賣業者에 대한 義務事項 賦與根據마련 그동안 食品製造, 加工業者와 食品接客營業者에게만 義務를 부여하여 規制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食品販賣業者에게도 위생상의 義務를 부여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하였으

며, 그 對象은 規模가 큰 販賣業所를 우선적으로 適用할 방침으로 현재 下位法令의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5) 市, 道에 食品振興基金의 設置

과징금을 主財源으로 하는 食品振興基金制度는 '86. 5. 10. 食品衛生法 전면 개정시 최초로 導入하였고, 당초 이 制度는 保健社會部에만 基金을 設置하고, 市, 道 또는 市, 郡, 區에서 賦課, 徵收하는 과징금도 1988년까지만 中央에 설치된 基金에 넣도록 하였으나 '89년부터는 市, 道 單位에 基金을 설치토록 하여 市, 都 또는 市, 郡, 區에서 賦課, 徵收하는 과징금을 해당 市, 道 基金에 넣도록 하여 食品振興基金 事業을 自體的으로 修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食品衛生法施行令등 下位法令의 改正方向

法改正에 따른 許可制度, 과징금 처분 基準, 食品販賣業의 신고 對象등에 대하여 改正作業을 進行중에 있고 輸入開放, 經濟自律化施策, 소비자인 국민의 食生活方式 變化등 國內,外 與件에 부응할 수 있도록 輸入食品의 管理制度 改善, 業種의 재분류조정, 영업허가권의 하부위임, 표시 基準·行政處分 基準 및 施設基準의 合理的 調整등을 위해 현재 食品衛生法施行令과 同法施行規則의 改正을 推進중에 있고 앞으로 立法豫告, 公聽會등을 통하여 業界, 消費者인 국민의 意見을 충분히 들어 금년중에 確定 施行할 計劃이며 아울러 보존 음료수 製造業등 營業許可를 制限하고 있는 業種에 대하여도 政府의 經濟自律化施策과 市場競爭原理에 입각하여 가능한한 제한을 緩和하는 등 食品의 製造, 流通體系를 改善할 방침이다.